

-시험후기-

제1회 법조윤리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 동 규

·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학 중

I. 들어가며

2010년 10월 9일 변호사시험을 위한 첫 관문인 법조윤리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난 직후에는 체감난이도가 예비시험에 비해 높아 불합격을 염려하는 학우들도 있었으나 막상 채점해본 후 대부분이 합격을 예상하였고, 실제로 지난 2010년 11월 1일에 있었던 합격자 발표에 따르면 응시자 1,930명중 1,919명이 합격하여 99.4%의 합격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복수정답 및 오답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나 규칙, 규정 그리고 판례 위주의 출제가 이루어졌고, 4지 선다형에 7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는 Pass/Fail 방식의 시험인지라 일정한 정도의 소양만 갖추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경우도 시험 직후 체감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으나 채점해 본 결과 97.5점(100점 기준)으로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본고에서는 법조윤리시험의 기본적인 출제 경향과 저의 공부 방법, 수험 교재 등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의 부족한 글이 제2회 법조윤리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여러분께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II. 법조윤리시험 출제 범위 및 출제 대상 관련 규정

1. 출제 범위

각 대학별 법조윤리 커리큘럼,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사례 영역별 분류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 법조윤리시험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편장	출제범위
제1편	변호사윤리 일반론
제2편	1.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2. 비밀유지 의무 3. 이익충돌 회피의무
제3편	1. 사건수입과 광고 2. 보수 및 이익 분배
제4편	1. 송무와 변호사윤리 (법정에서의 변호사 윤리 포함) 2. 비송무적 활동에서의 직업윤리 (공직변호사, 공직퇴임후 변호사 윤리 포함) 3. 사내변호사의 직업윤리 (유사지역 및 타 지역과의 관계, 사무직원에 대한 감독책임 포함)
제5편	1. 변호사 책임과 징계 (법무법인 등의 구성 형태와 책임 포함) 2. 검사 및 법관의 직무윤리 3. 외국법자문사의 직업윤리

2. 출제 대상 관련 규정

변호사법 중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21조~제39조),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외국법자문사법, 검사윤리강령, 법관윤리강령 등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바 출제 대상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법령	변호사법 (총 117조) 변호사법 시행령 (총 89조) 외국법자문사법 (총 53조) 외국법자문사법시행령 (총 9조)
회칙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총 58조) 변호사윤리장전 (총 38조)
규칙	검사윤리강령 (총 23조)

	법관윤리강령 (총 7조)
규칙 등	변호사징계규칙 (총 55조)
	변호사연수규칙 (총 28조)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총 19조)
	인터넷등을이용한변호사업무광고기준 (총 5조)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총 10조)

III. 주제별 쟁점사항 정리

1.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형성과 종결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위임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 바, 일정한 경우 위임계약 성립 전이나 종료 후에도 법률 전문가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로서의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사건 수임과 관련한 윤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비밀유지의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관련한 조항은 변호사법 제26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 정도 밖에 없으나, 구체적인 사례에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되는 예외사유로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인지, 최소한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한 해석기준을 익혀 둘 필요가 있습니다. 로펌내부의 정보유통은 허용되는지, 정보의 유출 없는 단순한 이용은 비밀의 누설에 포함되는지,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개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이익충돌 회피의무

이익충돌 회피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동일 사건에서의 동시적 이익충돌 상황을 규정하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 변호사윤리장전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4항, 동일하지 않은 사건에서의 동시적 이익충돌을 규정하는 변호사법 제31조 제2호, 윤리장전 제17조 제3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로 관련된 사건에서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을 규정한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2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로펌에서의 이익충돌(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3항)의 특수성과 관련해 ‘이익충돌의 전가(imputation)’ 문제, 공무원으로서 사무에 관여한 사건의 수입금지, 다수당사자 대리에 있어서의 이익충돌, 계쟁권리 양수금지(변호사법 제32조) 등의 쟁점에 대한 공부도 필요합니다.

4. 변호사의 광고

변호사의 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는바(변호사법 제23조), 광고내용의 규제와 광고방법의 규제에 관한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변호사법 제23조, 제30조, 변호사윤리장전 제6조, 제9조, 제12조, 그 밖에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변호사업무광고기준이 있습니다.

5. 변호사의 보수

변호사의 보수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변호사법 제28조, 제28조의 2, 변호사윤리장전 제29조~제38조 등이 있는 바, 성공보수금 관련 쟁점과 보수배분 관련 쟁점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6. 변호사에 대한 징계

변호사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의 종류와 사유를 알아 두셔야 하고, 징계 개시와 관련해 ‘신청’, ‘청원’, ‘재청원’ 등에 대하여,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 업무집행정지 등에 대하여 완벽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7. 그 밖의 쟁점 정리

앞서 검토한 쟁점 외에도, 형사변호사의 윤리와 관련해 변호사윤리장전 제14조, 제15조, 변호사의 공익활동과 관련해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법자문사법, 로펌의 형태와 관련된 변호사법 규정, 검사윤리강령 및 법관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IV. 수험 교재 및 공부 방법

1. 수험 교재

지난 학기에 법조윤리 과목을 수강하였던 관계로 수업에서 사용하였던 교재인 '법조윤리-한인섭 외 5인 공저, 박영사' 와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이상수 저, 서강대학교 출판부'를 기본교재로 하여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중점적으로 언급하셨던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정리와 관련하여서는 김남훈 변호사의 '법조윤리'를 부교재로 공부하였습니다.

모의고사의 경우 학교에서 교수님께서 출제하신 모의고사 및 김남훈 변호사의 모의고사 2회분을 풀어 보았고, 예비시험 문제와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수회에 걸쳐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2. 공부 방법

1학기에 법조윤리 과목을 수강하여서인지 공부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시간에 사용한 교재를 기본서로 하여 주요 쟁점을 반복하여 공부하고 다만 실전 감각을 기르기 위해 모의고사를 치르고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수강하신 이상 일주일 정도만 집중하여 공부하신다면 합격하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V. 맺으며

이번 제1회 법조윤리시험에 대해 시험의 난이도가 너무 낮았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고, 더 나아가 시험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험자체의 난이도는 예비시험에 비해 높았고, 다만 높은 합격률을 보인 것은 법조윤리시험자체가 변호사시험의 전제조건으로 7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Pass/Fail 방식에 4지 선다형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험운영 방식에 대해 비판하는 분도 계속 수 있겠으나, 이러한 출제 경향은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을 치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법조직역에서 활동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초적인 시험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합니다. 한 개인의 내면의 가치이자 행동의 기준이 되는 '윤리' 라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본인의 깊은 사고와 가치판단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며 최소한의 공동체적 가치를 배격하지 않는 이상 각 개인의 윤리는 존중되어야 함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을 기본권으로 하는 우리 헌법질서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있어 그 윤리성 평가는 필요 최소한의 정도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만 시험장소와 관련하여 제1회 시험의 경우 서울과 제주에만 고사장을 설치한 것은 현실적인 사정이 어떠하였는지 지방 수험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 법무부가 서울과 제주 외에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도 고사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법조일원화를 통한 사법개혁,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을 갖춘 전문 법조인 양성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로스쿨제도는 도입되었고 로스쿨 학우 여러분 모두 각자의 로스쿨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2012년 처음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을 위한 첫 관문인 법조윤리시험에서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